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제도 관련 법인세법령 안내 자료

2017. 4. 19.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 본 자료는 우리조합에서 관련규정 및 보도자료 등에 근거하여 회원사 안내용으로 작성한 참고 자료로써 유권해석과 실제 사례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 차

I. 용어의 정의	2
II. 업무용승용차 대상차량	3
III. 업무전용자동차 보험가입	4
IV. 감가상각비(상당액)	5
V. 차량의 처분손실	6
VI. 기타사항	7
VII.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계산	8
VIII.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사례	9
IX. FAQ	10
X. 별첨. 시행규칙 별지	16

1. 업무용승용차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중 업무를 위해 취득·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법인 또는 1)개인(사업자)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임차 혹은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영 제50조의 2 제2항]

※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로 처리되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음

3. 업무전용자동차보험

- 아래의 경우에 한해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

- ①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 ②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4. 업무사용금액

- 정의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업무용 주행거리/총 주행거리)을 곱한 비용

- 공식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감가상각비상당액+기타 유지비용) × 업무사용비율**

※ 단, 렌터카의 경우 대여 기간(30일 이내)에 따라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완화됨

5. 감가상각비 상당액

-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

※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차량 소유 형태(소유·리스·렌트)에 따라 상이하므로 Pg. 3 참조)

1)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본 자료에서는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II

업무용승용차 대상 차량

1. “업무용승용차” 정의

- 승용자동차 중 업무를 위해 취득·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2. 대상 차종

- 배기량 2천CC 초과인 승용자동차
-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단, 배기량 1천CC 이하인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
- 전기승용자동차 (단,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

※ 승합자동차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참조

3. 제외 차종

특례규정 제외 차량	근거 규정
경차 및 9인승이상 승용차	개별소비세법 제1조·영 제1조·영 별표1
아래 업종에서 사업상 수익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2조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 차량 6. 제1호~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업종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해당차량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
장의 서비스업에서 소유·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도움말

렌터카 회사가 법인세법 신고 시 임차인에게 대여한 렌터카는 업무용승용차에 포함되지 않으나, 임차한 법인(인)이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여한 렌터카는 업무용승용차에 해당됨

Ⅲ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1. 가입 대상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법인세 손금 산입을 하고자 하는 차량

2. 의무 가입기간

■ 원칙

-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단, 2016년에 한해 2016.04.01.부터 가입)
- 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 임차한 기간

■ 예외

1 임차한 승용차 중 해당 사업연도 총 임차기간 합계가 30일 이내인 경우

운전자를 ①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②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시행령 제50조의2 제8항

■ 2016년 限 예외 규정

1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2016.04.01. 이후 기존 보험 만기 도래 시, 즉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 시행령 부칙 제14조

2 기존 자동차보험 만기 도래 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상태로 2016.04.01.이전 차량을 처분하거나 임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2016.01.01.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손금 산입 가능

※ 시행령 부칙 제14조

3 2016년 사업연도(2016.1.1.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 限)전체 기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일수(2016.04.01.이후)에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실제 가입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만 손금 인정

※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

IV

감가상각비 (상당액)

1. 상각범위의 계산

■ 상각방법 : 정액법

■ 내용연수 : 5년

2. 감가상각비(상당액)의 범위

소 유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렌 트	총 임차료의 70% [임차료 구성항목별 요금을 고지할 필요가 없음]
리 스	총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

*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 시, 수선유지비 별도 구분이 어려운 경우 임차료(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 가능

3. 연간 손금산입 한도

일반 내국법인	800만원/年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의 내국법인	400만원/年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 (연간손금산입한도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12

4.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 한도초과액 계산

- (감가상각비 상당액 × 업무사용비율) - 연간손금산입한도

■ 처리방법

-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한 경우, **이월**하여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 방법

- ▲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의 경우, 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 ▲ 임차 종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 전액 손금 산입
- ▲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이월금액 중 남은 금액 전액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 참조 : 영 50조의2 제11항 · 제13항

1. 처분손실의 정의

-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2. 손금산입 한도

일반 내국법인	800만원/年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의 내국법인	400만원/年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 (연간손금산입한도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12

3. 한도초과액의 처리방법

-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의 경우 4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 산입
- 아래의 경우,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 산입
 - i)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 ii)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도움말

- ▲ 단,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신고(법인세법 60조 참조) 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내국법인 해산한 경우, 이월 금액 중 차액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산입

1. 비용명세의 증명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법인세법 제60조 참조)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참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2. 운행기록

■ 작성기간

- 원칙 :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 예외 : 2016.01.01.부터 2016.03.31.까지의 업무사용 비율은 2016.04.01.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운행기록을 통해 계산되는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 (단, 법인이 별도 기록을 통해 업무사용 입증 시, 이를 합산하여 업무사용비율 계산 가능)

■ 작성방법

-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

※ 참조 : 국세청고시 2016-12호

3. 업무사용비율의 계산

구 분	일반 법인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해당 사업연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 1천만 원 이하 - 100분의 100	■ 500만 원 이하 - 100분의 100
	■ 1천만 원 초과 - 1천만 원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 500만 원 초과 - 500만 원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 (상기 금액 ×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 ÷ 12 로 산출한 금액

VII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계산 (영 제39조 제3항의 법인은 예외)

운행기록유무

		작성 · 구비	미작성 · 미비
업무 전용 보험	가 입	■ 업무사용비율에 따른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상당액 × 업무사용비율) 중 800만원 이하 금액 +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감가상각비상당액) × 업무사용비율 손금 산입 합계액 ※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은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 전액 손금 산입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000만원 초과일 경우 -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큼 산입 ※ Min(관련비용, 1000만원)
	미 가 입	업무사용비율에 상관없이 전액 손금산입 불가	

참 조

운행기록 방법 및 업무사용의 범위

○ 운행기록

-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

※ 2016.4.1. 국세청 고시 2016-12호

○ 업무용 사용거리의 범위

- 제조 · 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활동, 출 · 퇴근 등 업무 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

○ 특례조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VIII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사례 (영 제39조 제3항의 법인은 예외)

기 본 조 건

1) 승용차 2) 업무전용보험가입 3) 운행일지 작성 4) 36개월 장기렌트(대여자동차)

세 부 조 건

계 산 공 식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사례 6

사례 7

사례 8

① 총 주행거리(km)	①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② 업무사용거리(km)	②	10,000	6,000	10,000	6,000	10,000	6,000	10,000	6,000
③ 업무사용비율	② ÷ ①	100%	60%	100%	60%	100%	60%	100%	60%
④ 임 차 료	④	8,400,000	8,400,000	8,400,000	8,400,000	12,000,000	12,000,000	24,000,000	24,000,000
⑤ 감가상각비상당액 ¹	④ × 70%	5,880,000	5,880,000	5,880,000	5,880,000	8,400,000	8,400,000	16,800,000	16,800,000
⑥ 기타비용	유류비 등 기타유지비	1,000,000	1,000,000	2,400,000	2,400,000	2,400,000	2,400,000	2,400,000	2,400,000
⑦ 합계 (차량 관련 비용)	④ + ⑥	9,400,000	9,400,000	10,800,000	10,800,000	14,400,000	14,400,000	26,400,000	26,400,000

업 무 사 용 금 액

⑧ 감가상각비상당액 ²	⑤ × ③	5,880,000	3,528,000	5,880,000	3,528,000	8,400,000	5,040,000	16,800,000	10,080,000
⑨ 관련비용	(⑦ - ⑤) × ③	3,520,000	2,112,000	4,920,000	2,952,000	6,000,000	3,600,000	9,600,000	5,760,000
⑩ 총 업무사용금액	⑧ + ⑨	9,400,000	5,640,000	10,800,000	6,480,000	14,400,000	8,640,000	26,400,000	15,840,000

손 금 산 입 합 계

⑪ 손금산입합계	⑩	9,400,000	5,640,000	10,800,000	6,480,000	14,400,000	8,640,000	26,400,000	15,840,000
⑫ 당해연도 손금산입액	i . ⑧ ≤ 800만원 = ⑩ ii . ⑧ > 800만원 = 800만원 + ⑨	9,400,000	5,640,000	10,800,000	6,480,000	14,000,000	8,640,000	17,600,000	13,760,000
⑬ 이월 손금산입액	⑧ > 800만원일 때, ⑧ - 800만원	0	0	0	0	400,000	0	8,800,000	2,080,000
⑭ 손금 불산입액	⑦ - ⑪	0	3,760,000	0	4,320,000	0	5,760,000	0	10,560,000

※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i)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ii) 해당 사업 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비율로 한다.

1. 운행기록 및 비용처리 관련 내용

Q1.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 설정과 10년 경과 후 전부 손금산입 가능 규정 신설 이유
A1.	고가차량을 통한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방지
■ 현행 법에 따르면 1억원의 고가차량도 대부분 4~5년 이내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고가차량 사용 문제가 대두됨 ■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를 800만원으로 설정하고, 업무 입증 비율에 따라 한도초과액은 이월하는 방법, 그리고 해당 차량의 처분 이후 10년이 되는 날 전액 손금처리하는 규정을 두어 장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하게 함으로써 고가차량을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유인을 축소 ※ 참조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년 주요 세법개정안 및 법인세법령	
Q2.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 대한 실효성 여부
A2.	실효성 제고 계획
■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허위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유사규모의 동종업종 타 업체에 비해 고가 승용차가 많거나 빈번하게 교체하는 경우 또는 업무 사용비율이 과다할 경우 세정차원에서 사적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제고 계획 ※ 참조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년 주요 세법개정안 및 법인세법령	
Q3.	운행기록 작성 시, 출·퇴근 용도의 업무용승용차 사용의 비용 인정 가능 여부
A3.	비용 인정 가능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방법에 출·퇴근, 판촉활동 등이 업무사용거리로 명시됨 ※ 근거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Q4. 개인사업자의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A4. 2016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대상 우선 시행 후 2017년부터 확대적용 예정

- ‘16년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하여 우선 시행 후 ‘17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확대 적용 예정

‘16년도부터 적용 대상 사업자	‘17년도부터 적용 대상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20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10억원 이상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1.5억원 이상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7,500만원 이상

* 간편장부 적용 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제외

※ **참조**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년 주요 세법개정안 및 법인·소득세법령

Q5.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할 경우 비용 인정 여부

A5.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

- 임·직원의 가족, 친인척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손금불산입**
- 별도의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 **손금산입 가능**

사례1	렌터카회사 임·직원 또는 렌터카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 탁송회사 임·직원이 임차인에게 차량 인도목적으로 운행
사례2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민법상 수선의무(유지관리의무) 부담을 목적으로 차량의 유지관리(점검, 검사, 정비 등)를 위해 렌터카회사 임·직원 또는 렌터카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 탁송회사 임·직원 등이 차량을 운행

※ **근거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등

Q6.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으로 인해 손금불산입한 경우 비용 처리 방법
A6.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개인(직원) 등 귀속자에 대한 소득 처분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이 아닌 비용 중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 귀속자가 주주인 경우 : 배당 - 귀속자가 임직원인 경우 : 상여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이 아닌 비용 중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 대표자 귀속상여 처리 - 단, 주주, 임원, 사용인 등에 대한 귀속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근거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Q7.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 시 수선비, 자동차세 등에 대한 고지 필요 여부
A7.	임차료 구성 항목별 세부 요금을 고지할 필요가 없음
■ 사용자(임차인)이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등을 직접 납부하는 소유 또는 리스 형태의 차량과 달리 i)렌터카 임차법인(인)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작성 시 임차료 외 세부비용을 알 수 없으며, ii)자동차대여업체 또한 세부 비용은 원가 개념이므로 공개가 어려움 ■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에 대해서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등에 대한 기타 비용에 대한 고지의 필요성이 없음 ※ 근거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6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4항 2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Q8.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리스 형태의 자동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법
A8.	임차료의 70%로 계산
■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하는 대상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대한 리스 성격의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도 임차료의 70%로 계산 가능 ※ 근거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6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4항 2호	

2. 업무전용보험 관련 내용

※ 조합에서 안내하는 보험관련 Q&A는 보험사별 상품을 조사한 결과 통상적인 약관 내용과 개정된 법인세법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으므로 각 업체에서 이용하는 보험사별로 약관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1. 업무전용보험의 보험료수준

A1. 현행 업무용 및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 비해 저렴

-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 시, 운전자의 범위가 제한되는 대신 보험료는 업무용·영업용 대비 약 0.7% 저렴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참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6.03.08.) 및 보험사 약관

Q2.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주요 내용

A2. 금융감독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세부 사항을 안내

■ 보험 가입의 주체

1	차량을 소유·리스할 경우	해당 법인
2	차량을 렌터카회사에서 임차하는 경우	렌터카 회사

-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은 업무용 및 영업용 자동차보험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특약 형태로 2016.04.01.(책임개시일)부터 판매되며, 렌터카회사는 영업용자동차 보험 가입 시 업무전용보험 특약 가입을 선택할 수 있음

-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서도 시중 보험사와 같이 업무전용보험상품을 특약 형태로 출시하여 판매 중

※ 참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6.03.08.) 및 보험사 약관

Q3. 사고 발생 시, 임직원 여부의 확인 방법

A3.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요청할 경우 해당 법인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자가 임직원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참조 : 각 시중보험사 업무전용보험 특약 안내자료

Q4.	계약 시기별 업무전용보험의 의무 가입 시기
A4.	손금산입을 하고자 할 경우, 2016.04.01.이후 계약 건은 업무전용보험 가입이 의무
■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 : 법인사업자에 한해 의무 적용 (개인사업자 제외) - 2016년 사업연도(2016.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 전체 기간 중 일부기간만 가입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일수에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실제 가입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만 손금 인정 ■ 특약 가입 시기 : 해당 법인의 월 장기 임차계약 체결 시 - 법인세법상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동안 보험을 가입해야 비용 인정이 가능하므로 임차법인과의 계약이 2016.04.02.에 시작될 경우, 업무전용보험 또한 2016.04.02.에 가입해야함 - 따라서 임차법인과 렌터카 임차 계약을 먼저 체결 후 추후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임차법인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단, 2016년에 한해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 비율에 따른 금액을 손금 산입 가능 ※ 렌터카 임차인인 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동안이 아닌 임차기간동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렌터카를 임차할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함	
Q5.	임직원의 가족 등 임직원 외의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A5.	대인배상 I 만 보상 [대인배상 I 이외는 면책규정 및 판례에 따를 것으로 예상됨]
■ 임직원의 가족 등 임직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나,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은 대인배상 I 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 I 은 업무전용보험 특별약관에 따른 한정을 적용받지 않음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용에 따라 보상 ① 자동차를 도난당했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인배상 I ·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을 보상 ②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관리하던 중 사고 발생 대인배상 II, 대물배상(한도有) 등을 보상 ※ 참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6.03.09.) 및 관련법령	

Q6.	1개월 단위의 월 장기렌터카 계약 시에도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
A6.	손금산입을 하고자 할 경우, 보험가입이 의무임
■ 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 임차한 기간동안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사용 비율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이 가능함 ■ 또한, 1개월 단위 대여 시에도 시중 보험사의 「임직원 운전자 한전운전 특약」 가입 가능 ■ 따라서, 월 장기대여 기간을 제외한 기간은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임차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단,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의 대여기간으로 대여계약서상 운전자한정특약을 체결한 경우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근거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4항 내지 8항	

Q7.	공동물건 계약도 가입 가능한가요?
A7.	계약자는 렌터카회사이며, 기명피보험자[렌탈고객]는 법인 공동으로 가입 가능
■ 임직원 범위, 보험료 할인율 등 상품 내용은 일반 물건과 동일 ■ 임차인(임차법인)이 2인이상인 경우 각각 세무처리(계산서 발행 및 운행기록 등)를 하여야 하므로 세법상 비용인정 여부는 현재 국세청에 질의 회신 中 (단, 공동임차인의 기명피보험자 등재는 보험사와 협의하여야 함) ※ 참조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6.03.09.) 및 보험사약관	

사 업 연 도	· · · ~ ·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① 차량 번호	② 차종	③ 임차 여부	④ 보험 가입 여부	⑤ 총주행 거 리 (km)	⑥ 업무용 사용거리 (km)	⑦ 무 사용비율 (⑥/⑤)	⑧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⑨ 감가 상각비	⑩ 임차료 ⑪ 감가상각 비상당액	⑫ 유류비	⑬ 보험료	⑭ 수선비	⑮ 자동차 세	⑯ 기타	⑰ 합계		
⑩ 합 계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계산

⑱ 차량 번호	⑲ 업무사용금액			⑳ 업무외사용금액			㉓ 손금불산입 합계 (㉒+㉓)	㉔ 손금산입 합계 (㉒-㉓)
	㉑ 감가상각비 (상당액) [(⑨ 또는 ⑪) × ⑦]	㉒ 관련비용 [(⑬-⑨ 또는 ⑬-⑪) × ⑦]	㉓ 합계 (㉑+㉒)	㉕ 감가상각비 (상당액) (⑨-㉑ 또는 ⑪-㉑)	㉖ 관련비용 [(⑬-⑨ 또는 ⑬-⑪)-㉒]	㉗ 합계 (㉕+㉖)		
㉔ 합 계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㉓ 차량 번호	㉔ 차종	㉕ 취득 일 (임차기간)	㉖ 전기이월액	㉗ 당기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㉘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누계	㉙ 손금추인(산입)액	㉚ 차기이월액(㉗-㉙)
㉛ 합계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㉜ 차량 번호	㉝ 양도가액	㉞ 세무상 장부가액				㉟ 처분손실 (㉞-㉟<0)	㊱ 당기손금산입 액 (㉞≤800만원 또는 400만원)	㊲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 (㉞-800만원 또는 400만원)
		㊳ 취득가액	㊴ 감가상각비 누계액	㊵ 감가상각비한도초과금 액 차기이월액(=㉛)	㊶ 합계 (㊳-㊴+㊵)			
㊷ 합계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㊸ 차량 번호	㊹ 차종	㊺ 처분 일	㊻ 전기이월액	㊼ 손금산입액 (800만원 한도 또는 400만원 한도)	㊽ 차기이월액 (㊻-㊼)
㊾ 합계					

작성 방법

1. 업무사용비용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 가. 차량번호란(㉠): 업무용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
- 나. 차종란(㉡):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 다. 임차여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여부(자가, 렌트, 리스)를 적습니다.
- 라. 보험가입여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기재형식: 여 또는 부)
- 마. 총주행거리란(㉤): 해당 사업연도의 총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 바. 업무용 사용거리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근 및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적습니다.
- 사. 업무사용비용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을 적으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 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액 계산

- 가. 업무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용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나. 업무외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다.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이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명세

- 가. 전기이월(㉫):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s
- 나.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누계(㉬): ㉫의 금액과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 다. 손금추인(산입)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9항의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을 손금으로 추인(산입) 합니다.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 가. 감가상각비 누계액(㉮): 「법인세법」 제23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적습니다.
- 나. 처분손실(㉯):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 다. 당기손금산입액(㉺): ㉮의 금액이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적습니다.
- 라.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의 금액이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명세

- 가. 전기이월액(㉼):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 나. 손금산입액(㉽): 전기이월액 중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에 관한 별지 서식】 <2016.4.1. 제정>

과 세 기 간	. . ~ . .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상 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 기본정보

①차 종	②자동차등록번호

2. 업무용 사용비율 계산

③ 사용 일자 (요일)	④ 사용자		운 행 내 역					
	부 서	성 명	⑤주행 전 계기판의 거리 (km)	⑥주행 후 계기판의 거리 (km)	⑦주행거리 (km)	업무용 사용거리 (km)		⑩비 고
						⑧출·퇴근용 (km)	⑨일반 업무용 (km)	
			⑪과세기간 총주행 거리 (km)			⑫과세기간 업무용 사용거리 (km)		⑬업무사용비율(⑫/⑪)

작성 방법

1. ①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2. ② 업무용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③ 사용일자를 적습니다.
4. ④ 사용자(운전자가 아닌 차량이용자)의 부서, 성명을 적습니다.
5. ⑤ 주행 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습니다.(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⑤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6. ⑥ 주행 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습니다.(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⑥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7. ⑦ 사용시마다 주행거리(⑥-⑤)를 적거나, 사용자별 주행거리의 합을 적습니다.
8. ⑧ 업무용 사용거리 중 출·퇴근용(원격지 출·퇴근을 포함) 사용거리를 적습니다.
9. ⑨ 업무용 사용거리 중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업체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업무관련 교육·훈련 등 일반업무용 사용거리를 적습니다.
10. ⑪~⑬ 해당 과세기간의 주행거리 합계, 업무용 사용거리 합계, 업무사용 비율을 각각 적습니다.